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및 재산정 〉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78호)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78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 이유 및 주요내용	1
【조지연의원안】	1
【이용우의원안】	2
II. 검토의견	4
1.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및 재산징	4

I. 제안경위·이유 및 주요내용

【조지연의원안】

1. 제안경위

2024년 10월 14일 조지연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24일 1차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주)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 해당 사업장은 '21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음.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받았던 산재보험료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정부도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8.13)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개편과 함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요율을 감면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규정하면서,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는 기준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아리셀과 같이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았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유인하고자 함(안 제15조).

【이용우의원안】

1. 제안경위

2024년 10월 30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이후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형

식화를 막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해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됨. 그 중 하나로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받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취소될 경우 산재 보험료 재산정의 대상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보험료 환수조치를 하지 않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실시하며,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의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II. 검토의견

1.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및 재산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이용우의원안의 경우 인정기간 중이거나 인정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함) 감면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15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조지연의원안	이용우의원안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 ⑦ (생략)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현행과 같음)	⑧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재해예방활동의		2. -----

<u>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제외한다.</u>		<u>인정기간 중이거나 인정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u>----- ----- ----- ----- -----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⑨ <u>제8항제1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u>	⑨ <u>제8항제1호 및 제2호</u>----- ----- ----- ----- ----- ----- ----- ----- -----.	⑨ <u>제8항제1호 및 제2호에</u>----- ----- ----- ----- ----- ----- ----- ----- -----.
⑩ <u>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한다.</u>	⑩ <u>제8항제3호</u>----- ----- ----- ----- ----- ----- ----- ----- -----.	⑩ <u>제8항제3호에</u>----- ----- ----- ----- ----- ----- ----- ----- -----.
⑪·⑫ (생략)	⑪·⑫ (현행과 같음)	⑪·⑫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율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제14조제7항)율과 그 외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제14조제3항)로 구분할 수 있는데(이하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산재보험료율은 그 외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것을 의미함)¹⁾,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협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됨.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²⁾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조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³⁾ 책정한 뒤 인화된 산재보험료율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과 합한 값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고, 이를 “산재예방요율”이라고 함.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4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사업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이하 “인하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frac{20 \times \text{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100 \times 365}$$

2. 제1항제2호의 경우:
$$\frac{10 \times \text{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100 \times 365}$$

재해예방활동의 종류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⁴⁾,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사업장에서의 재해 예방을 위한 산재예방계획 수립이 있음.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제외)⁵⁾, ③그 밖에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4)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됨.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게 됨.

또한, ②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③그 밖에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하게 됨.

그런데 2021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간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아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받은 (주)아리셀에서 같은 해 6월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더라도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감면액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그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

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고 있는 보험연도에 그 활동 인정기간 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시 조치의 대상 비교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시 조치	현 행	개정안
산재예방요율 적용 취소 및 산재보험료 재산정·부과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비율에 따른 산재예방요율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 산정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 그 밖에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개정안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사업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 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조지연의원안은 현행처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이용우의원안은 인정기간 중이거나 인정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동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및 사업주의 신뢰보호 등의 측면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방안이 더 바람직한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538